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8. ~ 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6급 1명)”을 “2명(6급 2명)”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특허청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592”를 “1,5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90”을 “1,59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5”를 “787”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06”을 “40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92”를 “1,5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90”을 “1,59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4”를 “826”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66”을 “368”로 한다.

별표 9 가목4)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특허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5조 관련)

제2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7
일반직 계	7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u>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u>1명(6급 1명)</u>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장 <u>한시조직</u> <u><신 설></u>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② ----- ----- ----- <u>2명(6급 2명)</u> ----- ----- ----- ----- 제8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25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u>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특허청에 둔다.</u>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92</u>	<u>1,596</u>	+4
·	·	·	
·	·	·	
일반직 계	<u>1,590</u>	<u>1,594</u>	+4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 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 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 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 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 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 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85</u>	<u>787</u>	+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 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 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			

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 주사	<u>406</u>	<u>408</u>	+2
·	·	·	
·	·	·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92</u>	<u>1,596</u>	+4
·	·	·	
·	·	·	
일반직 계	<u>1,590</u>	<u>1,594</u>	+4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24</u>	<u>826</u>	+2
·	·	·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			

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 주사	<u>366</u>	<u>368</u>	+2
·	·	·	
·	·	·	